

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관의 장
선	
람	

수 영 구 보 호외 제640호 2022. 1. 10.(월)

훈 령

- ○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1
- ○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·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---4

· 발행 : 수 영 구 · 편집 : 기획전략과 (610-4075)

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22년 1월 10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64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문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수영구청장"을 "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"으로 한다.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"수영구청장"을 "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"으로, "행정처분전에 행하는 청문사항에 관하여"를 "행정처분 전에 하는 청문에"로 한다.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"해당하는 자로"를 "해당하는 사람으로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구본청 소속 계장급 공무원

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있는자"를 "있는 사람"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"지체없이"를 "지체 없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 제6조제2항 중 "제5조제1항의 자"를 "제5조제1항의 사람"으로 한다. 제9조 중 "지체없이"를 "지체 없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제안이유

청문주재자 인력 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◆ 주요내용

- 가. 정의 규정 중 '부서장' 부분 삭제(제2조)
- 나. 청문주재자 인력 풀 구성 방법 일부 개정(제5조)
 -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급 공무원 → 구 본청 소속 계장급 공무원
 - 담당급 공무원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
- 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·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22년 1월 10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65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·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위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

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·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구본청 과별 행정지원과란 중 직급별 7급 정원 "10"을 "11"로, 직렬별 정원 내용 중 "운전직2"를 "운전직3"으로, 직급별 소계 "35"를 "36"으로 하고, 안전관리과란 직급별 7급 정원 "7"을 "6"으로, 직렬별 정원 내용 중 "공업직2, 운전직1"을 "공업직2"로 하고 직급별 소계 "22"를 "21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◆ 제안이유

행정사무의 기능 증감 분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별 직렬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함으로써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◆ 주요내용

가. 행정지원과 운전직 7급 1명 증원 및 안전관리과 운전직 7급 1명 감원